2023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



2022. 8.

하나고등학교 (www.hana.hs.kr)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2023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안전관리 방안

하나고등학교

	(목적)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학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형	운영
--	------	--------	----	----	---	----	-----	-------	----	----	----

- □ (기본방침) 코로나19 지역 확진자 급증 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 교육청 협의에 따라 전형일,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 변경
 - ※ 접수기간 이후 방역상황에 따라 전형방법 변경 등을 홈페이지에 안내할 수 있음
- □ **안전 관리 방안**(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험 방역관리 안내」('22.6.) 적용)
 - 응시자의 **코로나19 격리 사전 신고**
 - ➤ (격리자)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즉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야 함
 - ➤ (신고 방법) 02-6913-1160로 전화 (hana2021@hana.hs.kr로 메일 발송)
 - ※ 격리 현황 미통보 또는 거짓통보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코로나19 관리 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교육부-교육청-학교 간 비상대응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지자체-보 건소-의료기관) 구성
 - 시험장(학교) **감염관리책임자** 및 **감염병관리전담자** 지정
 - 응시자 및 시험감독관 전원에 대해 유증상자 해당 여부 확인
 - 안전한 전형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추진**(별도 공고)

-< 응시 안내>⁻

- ▶ (격리자) 보건소의 사전 외출 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 시험실 응시 가능
- ▶ (입원치료 응시자) 의료기관 내 비대면(온라인·화상) 면접 응시 가능,
 주치의의 외출 허락을 받은 경우에 한해 별도 시험실 응시 가능
- ▶ (유증상자)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별도 지정된 시험실 응시 가능
- ▶ (응시자 / 시험관리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전원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 ※ 단, 전형 특성 및 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격리자** 및 **입원치료 응시자**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2023학년도 하나고등학교 입학전형 요강

1

모집 인원 (남녀 8학급)

모집 구분	모집 전형	모집 정원	비고
정원 내	일반전형	160명(남 80명, 여 80명)	모집정원의 80%
	사회통합전형	40명(남 20명, 여 20명)	모집정원의 20%
	소 계 (A)	200명(남 100명, 여 100명)	
	보훈자자녀전형	6명	모집정원의 3% 이내
정원 외	고입특례대상자전형	4명	모집정원의 2% 이내
	소 계 (B)	10명	
	총 모집인원(A+B)	210명	

- ※1) 지원자는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보훈자자녀전형, 고입특례대상자전형 중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
 - 2) 사회통합전형은 모집 정원의 20%(40명)를 의무적으로 선발함.

(사회통합전형 중 '다문화가족 자녀', '군인자녀'는 전국모집임. 그 외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울모집임.)

3) '정원 외' 보훈자자녀전형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하며,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기타 '국가보훈대상자'는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음.

2 지원 자격

- 가. 공통자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 ※ 학력인정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의 졸업예정자는 학생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해야 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및 제97조 제1항)
 - 2) 중학교 졸업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3)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로서 서울특별시 에 거주하는 자
 - 4) 다른 시도 소재 특성화중학교 및 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서울 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 위 '2)~4)'항의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u>원서 접수일 현재</u>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한다.
 - 5) 사회통합전형 중 '다문화가족 자녀', '군인자녀'는 국내 중학교 졸업자(학력 인정자 포함) 및 졸업 예정자

나. 전형 유형별 지원 자격 : '가'항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해당 전형 유형별 추가 지원 자격을 갖춘 자

7	<u></u> 전형 구	·분			유형별 지원 자격		
	일반	전형	'가'	항의 자격을 갖춘 자(추가 기	 다격 요건 없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 자 또는 그 자녀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근거하여 주민자치센 터에 등록된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 원대상자		
		기회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대상자로 국가보훈대 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자)		
		균등 전형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자		
	사회 통합 전형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 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갑작스런 사유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아동복지법」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포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위원회의 의견서 작성 및 첨부		
정 원 ::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자녀		
내			양성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당시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 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거주자로서 해 당 지역 중학교 졸업(예정)자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족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 원대상자 이외 소년·소녀가장 또는 조손가족의 자녀		
		사회 다양성 전형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2.6		순직 군경·소방관·교원· 공무원 자녀	순직군경, 순직소방관, 순직교원, 순직공무원의 자녀		
				한부모가족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제5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의 경우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		
			2	다자녀가족(3자녀 이상) 자녀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족의 자녀(자녀 모두 지원 가능)		
			순 위	군인 자녀	15년 이상 재직 중인 중령 이하 군인 자녀		
			••	경찰(해양경찰) 자녀	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감 이하 경찰(해양경찰) 자녀		
				소방공무원의 자녀	15년 이상 재직 중인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		
 정	보훈 ^지 전		국7	환경미화원 자녀	시·도 또는 군·구 소속으로 재직 중인 환경미화원의 자녀 나로 지정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원 외 		특례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선정되어 통보된 자	에 의거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		

[※] 사회다양성전형은 2022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해 지원 가능

🛟 참고 사항

- 1. 사회통합전형 중『기회균등전형』
 - 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지원 학생 본인이 국가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대상자 제외)이거나 부 또는 모가 국가보훈대상자인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범위 및 근거】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3조)
- ■고엽제후유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 (주의)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자 자녀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사회통합전형과 별개로 시행되는 보훈자자녀 정원 외 전형 지원 대상임.

【보훈자자녀 정원 외 전형 지원 대상자 근거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 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요)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요건】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아동복지법」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증빙 서류 예시】

-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아동복지시설 재원증명서 등
- 다. 교육비 지원 관련 안내 사항

2023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시 적용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등의 기준은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과는 별개**이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2023학년도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님.**

2. 사회통합전형 중『사회다양성전형』

가. 필수요건

2022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자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재산세 과세 금액은 부모(※ 이혼한 경우 친부 및 친모) 모두 확인·합산하여 기준표 해당 금액 이하인 가구(<mark>참고자료1</mark>참고)
- ※ 직장가입자 및 혼합: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재산세(주택분) 과세금액 모두 반드시 충족
-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충족 (※ 재산세 과세내역 확인 불필요)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최근 6개월 평균액)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2022년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금액은 합산에서 제외
- ※ 재산세(주택분)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재산세 주택 과세 합산금액임.
- 전국에 소유한 모든 주택(아파트)에 대한 납부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토지, 상가 등에 대해 과세된 재산세는 미포함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기준표】

(단위: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지역)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2인	182,739	190,860	185,461	621,840
3인	235,821	258,283	240,332	980,880
4인	287,535	320,986	296,681	1,336,560
5인	350,228	386,763	370,489	1,683,360
6인	398,320	435,141	434,898	2,022,240
7인	473,200	511,899	511,709	2,357,760
8인	511,709	549,554	567,870	2,693,280
9인	567,870	602,760	663,895	3,028,560
10인	663,895	684,512	850,979	3,364,080

나. 다문화가족

- 1)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2)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되었더라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게 지원 자격을 인정함.
- 다. 다자녀가족(3자녀 이상) 자녀 : 자녀 모두 지원 가능(지원 가능 자녀수 제한 없음)하며, 학교별 선발 인원은 사회통합전형 모집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함.

3. 사회통합전형 지원자는 다음과 같이 지원 자격에 대한 심의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중복 실시함.

	[1단계]		[2단계]		[3단계 (필요시)]		[4단계]
	중학교에 사회통합전형 지원 신청서 제출	\Diamond	중학교 추천위원회 심사	\Rightarrow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Rightarrow	중학교 학교장 확인서 발급
				1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Rightarrow	고등학교에 지원서 제출 시 증빙서류 함께 제출	\Diamond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심의	\Rightarrow	고등학교 1단계 전형	\Rightarrow	고등학교 2단계 전형

- ※ [3단계]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전형에만 해당되며 다른 전형은 추천위원회 심사만 실시
- ※ 중학교에서 위 [4단계]까지의 절차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지원자도 지원 자격 여부를 본교에서 재심의하며, 그 결과에 따라 탈락될 수 있음.

4 고입특례대상자(정원 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 가목)	. 국내 중학교에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 나목)	전학 또는 편입 학하여 졸업한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제2호 다목)	¹ 자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북한이탈주민 등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5 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 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하여 졸업한 자			

제출 서류

 대상	유형별 제출 서류
-11.9	
	o 입학원서 1부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하여 중학교장 확인(직인 날인)) o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표 2부 - 단면으로 출력하여 중학교장 직인으로 원본대조필 및 간인을 받은 원본을 제출 - 비교과 영역(출결, 봉사활동 등) 작성 기준일(2022.11.18.(금))이후 출력 - 학교생활기록부표(상급학교제출용) 출력 옵션 중 '서울 이외 방식 자사고·일반고 입시용' 탭을 선택하여 다음 유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출력함.
	■학교생활기록부 출력 시 유의 사항
	o 내신산출결과표(인터넷 접수 사이트에서 입력 후 출력) 2부 ※ 단,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또는 합격증 사본 2부, 성적증명서 2부 제출 (합격증 사본의 경우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원본대조필 확인) ○ 중학교 학생건강체력평가(PAPS)의 '심폐지구력', '근력·근지구력' 종목 3등급 이내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단, 해당자만 제출함.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체력검사 당일 종목별 응시 기준에 따라 체력검사에 응시해야 함.)
	■ 학생건강체력평가(PAPS)의 해당 종목 • '심폐지구력' 종목 : 왕복오래달리기, 오래달리기-걷기, 스텝검사 중 한 종목 • '근력·근지구력' 종목 : (무릎대고)팔굽혀펴기, 윗몸말아올리기, 악력검사 중 한 종목
모든 지원자 (공통)	- NEIS > PAPS > 평가결과조회 > '개인별이력조회'에서 '심폐지구력', '근력·근지구력' 종목 조회 후 출력하여 중학교장 확인(직인 날인) -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증빙 서류의 출력 및 제출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추후 본교 홈페이지 및 원서 접수 사이트를 통해 공지할 예정임.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 외국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외국학교의 학력을 인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관할 재외 한국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 자기소개서 (단, 2단계 면접대상자만 인터넷 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함.) - 자기소개서는 온라인으로만 제출하며 마감 시간 이후 입력 및 수정 불가 - 배제사항 기재 시 0점 또는 감점 처리
	■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사항 • TOEFL, TOEIC, TEPS, TESL, TOSEL, PELT, HSK, JLPT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 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교과목의 점수나 석차 •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부모 또는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 부모 또는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 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 학교에 서 주관하지 않은 모둠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및 캠프) 등 •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 또는 이를 암시하는 내용
	- 위의 배제사항을 간접적으로 또는 우회적으로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함. - 대리 작성, 허위 작성 혹은 표절하였을 경우 감점, 입학 취소 등 불이익 부과 (유사도 검증 시스템으로 검증 예정)

대	상		유형별	제출 서류				
일반	전형	o 위의 공통 서류 외에 추가 사항 없음.						
	사회 통합 전형 공통	합 o 2023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붙임2] 형 o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	수급자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1부				
			차상위 자활대상자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 공단) 1부				
		법정차상위대상자	차상위장애 수당대상자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차상위장애 연금대상자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사회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통합 전형	기회 균등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 자 확인원'(관할 보훈지청) 1부(<mark>참고자료2</mark> 참고)					
	전형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교육비지원확인서(학교) 1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 추천	천서 1부[붙임3] o 건강보험료 납부 (건강보험료 납부 o 학교운영위원회 ※ 증빙서류가 요 o 경제적 형편이 급 - 실업급여수급자 권 압류 통지사 병원 진단서, 경 - 부모의 사망, 모의 정보를 확	보확인서,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확인) 심의 결과 회의록 전는 경우 추천위원회 의견서 포함 관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 나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채 너,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 확인서, 급여 명세서, 당애인 등록증,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 이혼, 별거, 가출, 연락 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 작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에 동 사실을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산세 과세 증명 등을 로 판단				

대상				유형별 제출 서류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o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o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확인) o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회 다양성 전형 공통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혼합(지역+직장)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부 ※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으로 발급받 아 제출 (동주민센터 방문 발급, 온라인 발급 불가) ※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 		
			다문화가족 자녀	o 부 또는 모가 귀화한 경우 귀화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o 부 또는 모가 외국 국적자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o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1부		
	사회 다양성 전형		특수교육대상자	o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통지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사회		1순위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	o 졸업(예정)증명서 1부		
통합 전형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족의 자녀	o 사실 관계 확인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1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o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대조필) 1부 ※ 2019.7.1. 이전 발급 장애인 등록증: 장애 1~3급		
			순직 군경 • 소방관 • 교원 • 공무원 자녀	o 순직군경, 순직소방관, 순직교원, 순직공무원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한부모가족 자녀	o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다자녀가족(3자녀 이상) 자녀	o 추가서류 필요 없음(공통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함) ※ 단, 입양으로 인한 다자녀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제출		
		2순위	환경미화원의 자녀(시·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o 재직증명서 1부		
			군인 자녀(중령 이하)			
			경찰(해양경찰) 자녀(경감 이하)	o 15년 이상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소방공무원 자녀(소방경 이하)			
	보훈자자녀 전형		o 2023학년도 고입(사회통합·보훈자 자녀·특례대상자) 전형 학교장 확인서 1부[붙임1] o 2023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붙임2] o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관할 보훈지청) 1부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하여 통보된 자는 증명서 제출 불필요			
고입특례 대상자전형		○ 2023학년도 고입(사회통합·보훈자 자녀·특례대상자) 전형 학교장 확인서 1부[붙임1] ○ 2023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붙임2] ○ 외국학교 성적증명서 2부 ○ 출국 전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표(해당자만 제출) 2부				

-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은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 ※ 모든 제출서류는 단면으로 출력하고, 필요시 클립 또는 집게를 사용해야 함.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4

전형 일정 및 원서 접수

가. 전형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유의 사항
	온라인 입력 시험 운영	2022.12.2.(금) 09:00 ~ 12.6.(화) 24:00	본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사이트)	o 원서를 입력하여 저장 가능
입학원서 온라인 접수		2022.12.7.(수) 00:00 ~ 12.9.(금) 15:00	본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사이트)	o 전형료 30,000원 결제 (인터넷 접수 수수료 별도) o 접수 방법은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서류 제출		2022.12.7.(수) ~ 12.9.(금) [업무 시간 09:00 ~ 17:00]	본교	o 업무 시간에 본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단, 우편 접 수는 2022.12.9.(금) 17시 도 착분에 한함.)
면접	접대상자 발표	2022.12.15.(목) 17:00	본교 홈페이지	
;	계 면접대상자 자기소개서 온라인 제출	2022.12.15.(목) 17:00 ~ 12.19.(월) 24:00	본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사이트)	o 온라인 작성 제출 o 마감 시간 이후 자기소개서 입력 및 수정 불가
면접	1 및 체력검사	2022.12.25.(일) ~ 12.27.(화)	본교	o 시간 및 장소 추후 본교 홈페 이지에 공고 o 체력검사는 중학교 학생건강 체력평가(PAPS)로 대체 가능
Ç	합격자 발표	2023.1.2.(월)	본교 홈페이지	
	예비 소집	2023.1.7.(토)	본교	
	신체검사	2023.1.9.(월) ~ 1.11.(수)	본교 지정 병원	
추 가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2023.1.12.(목) ~ 1.13.(금) [업무 시간 09:00 ~ 17:00]	본교 방문 제출	o 추가모집은 정원 미달 시에만 실시 o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
모 집 	합격자 발표	2023.1.18.(수)	본교 홈페이지	o 추가모집 합격자는 별도 지정 기간에 신체검사 실시
등록	류금 납부 기간	2023.1.25.(수) ~ 1.27.(금)		

【원서 접수 시 유의 사항】

- ■온라인 접수 및 전형료 결제가 끝나고 접수번호가 생성되면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됨.
- 온라인 접수 완료 이후 기한 내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서류미비로 불합격 처리됨. (1단계 전형료는 환불하지 않으며 다른 학교 지원 불가)
- ■전형료 결제 이후 타 학교(국제고,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등) 지원(전형료 결제) 시 이중지원으로 불합격 처리됨.
- ※ 학생부 출결 마감 기준일은 2022.11.18.(금)이며, 전형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 면접 일정은 면접 대상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체검사 일정은 본교 지정 병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원서 교부 및 접수

1) 원서 접수 방법 및 절차

본교 홈페이지(www.hana.hs.kr) 접속

- → 팝업창 또는 입학 안내에 링크된 '원서 접수 바로가기' 클릭
- → 원서 접수 사이트 회원 가입 (지원자 본인 명의로 가입)
- → 입학원서 작성 및 전형료 결제
- → 입학원서, 수험표, 접수증 등 필요 서류 출력
- → 소속 중학교 담임교사 및 학교장 확인 후 날인
- → 본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 (단, 우편 접수는 2022.12.9.(금) 17시 도착분에 한함.)
- ※ 온라인 접수를 실시하므로 실제 입학원서 교부 절차는 없음.
- ※ 지정된 서류 제출 기간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하므로, 반드시 온라인 원서 접수 전에 지원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특히 사회통합전형, 보훈자자녀전형, 고입특례대상자전형의 경우 지원 자격이 충족되지 않으면 온라 인 접수 후 또는 서류 제출 후에도 불합격 처리됨.

2) 온라인 원서 접수 및 전형료 결제

- 기간: 2022.12.7.(수) 00:00 ~ 12.9.(금) 15:00
- 전형료: 입학원서 입력 시 전형료 30,000원(2단계 전형료 20,000원 포함)을 온라인 결제하여야 함. (인터넷 접수 수수료 별도) 단, 2단계 면접 대상자가 아닐 경우 2단계 전형료 20,000원을 환불 예정임.

3) 온라인 접수 후 서류 제출

- 기간 : 2022.12.7.(수) ~ 12.9.(금) [업무 시간 09:00 ~ 17:00]
- 장소 : 본교 입학접수처 (본교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 입학원서 및 기타 구비 서류(자기소개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
- ※ 온라인 접수가 완료된 후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제출한 경우 '서류 미비'로 불합격 처리됨.

4) 2단계 면접대상자 자기소개서 온라인 제출

본교 홈페이지(www.hana.hs.kr) 접속

- → 팝업창 또는 입학 안내에 링크된 원서 접수 사이트에 접속
- → 자기소개서 온라인 입력 시작 (2022.12.15.(목) 17:00~)
- → 자기소개서 온라인 입력 및 저장 완료하여 온라인 제출 (2022.12.19.(월) 24:00까지, 이 시간 이후 자기소개서 입력 및 수정 불가)

※ 2단계 면접대상자가 자기소개서 온라인 제출을 하지 않으면 '서류 미비'로 불합격 처리됨.

5

전형 방법 및 사정 기준

가. 선발방법

78	1단	·계		총점		
구분	교과 성적	출결	서류	면접	체력검사	0 =
점수	40	감점	20	40	전형위 심의	100

나. 전형요소별 평가 방법

- 1) 교과 성적
 - o 교과 성적은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를 반영하며, 학기별 반영비율을 고려함.

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반영비율	20%	20%	30%	30%

o 교과 성적 반영 과목은 다음과 같으며, 과목별 가중치를 고려함.

과목	국어	사회/역사	수학	과학	영어
가중치	2	1	2	1	2

- o 사회/역사 과목의 성취도를 입력할 때, 사회와 역사 중 이수한 과목의 성취도를 입력하고, 사회와 역사를 모두 이수한 학기에는 '역사' 성취도는 입력하지 않고 '사회' 성취도만 입력함.
- o 교과 성적은 각 과목별 성취도에 대한 환산점수를 이용하여 계산함.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 에서 성취도를 입력)

성취도	А	В	С	D	Е
환산점수	40	30	20	10	0

- o 해당 학기별로 위 반영 과목 중 성취도가 부여된 과목의 성취도(A, B, C, D, E)를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입력함. 이때 수강하지 않은 과목의 성취도는 '없음'을 입력함.
- o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과목별 성취도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과목의 원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영함.

원점수	90점 이상	90점 미만 ~ 80점 이상	80점 미만 ~ 70점 이상	70점 미만 ~ 60점 이상	60점 미만
성취도	A	В	С	D	E

o 외국에서 수학한 자의 경우 국내 중학교 2, 3학년 교과 성적이 한 학기라도 있으면 국내 중학교 성적만 반영하며, 국내 중학교 2, 3학년 교과 성적이 모두 없으면 지원자가 제출한 외국학교 성적증명서의 성적을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평가함.

2) 출결상황

- o 출결감점 = 미인정결석일수 × 0.1점
- o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 중 3회를 미인정결석 1일로 간주함.
- o 출결점수의 기준은 2022년 11월 18일(금)까지의 중학교 재학 기간을 원칙으로 함.

o 부양의무자 중 1인과 동반한 '정당한 해외출국(공무원 및 상사 주재원인 부모의 해외 파견 등)' 학생에 대하여 미인정유학기간의 결석 처리로 인한 출결점수 감점 등의 불이익이 없음. (단, 중 학교의 확인 및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3) 서류평가

o 평가 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o 평가영역 및 배점

평가영역	자기주도학습영역	인성영역	총점
배점	15	5	20

o 평가 방법 : 종합적인 평가

4) 면접평가

o 평가영역 및 배점

평가영역	자기주도학습영역	인성영역	총점
배점	35	5	40

o 평가 방법 : 종합적인 평가

5) 체력검사

o 종목별 남·여 이수 기준

종목	남자	여자	제한 시간
윗몸일으키기	25회	15회	1분
오래달리기	1,600m 완주	1,200m 완주	10분

- ※ 건강상 특이사항이 있는 학생은 의사소견서 등 관련 서류를 체력검사 실시 전에 제출해야 함.
- ※ 건강상 특이사항이 있는 학생 및 체력검사 기준에 미달한 학생의 최종 합격 여부는 입학전형 위원회에서 심의함.
- o 종목별 응시 기준 (단, 체력검사는 중학교 학생건강체력평가(PAPS)로 대체 가능함.)

중학교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제출 서류 내용	체력검사 당일 응시 종목	
'심폐지구력', '근력·근지구력' 종목 모두 3등급 이내	없음 ('오래달리기', '윗몸일으키기' 모두 이수 처리)	
'심폐지구력'종목만 3등급 이내	'윗몸일으키기'만 응시 ('오래달리기'는 이수 처리)	
'근력·근지구력' 종목만 3등급 이내	'오래달리기'만 응시 ('윗몸일으키기'는 이수 처리)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윗몸일으키기', '오래달리기' 모두 응시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 2023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 한해 중학교 학생건 강체력평가(PAPS)의 '심폐지구력' 종목(왕복오래달리기, 오래달리기-걷기, 스텝검사 중 한 종목), '근력·근지구력' 종목((무릎대고)팔굽혀펴기, 윗몸말아올리기, 악력검사 중 한 종목) 3등급 이내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각각 '오래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종목의 이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함.

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1)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과 인성 영역의 각 항목을 모두 포함하되 영역 구분 없이 1,500 자(띄어쓰기 제외)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 2) 지원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에 입력 및 저장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함. ※ 대리 작성, 허위 작성 혹은 '유사도 검증 시스템'을 통해 표절이 확인될 경우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 부과
- 3) 본문에 각종 인증 시험 점수, 교과목의 점수·석차,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 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배제사항을 직접 또는 간접적(우회적)으로 기재하거나 면접 시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0점 처리함.
- 4) 지원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부모 또는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암시하는 내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우회적)으로 기재하거나 면접 시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 영역별 배점의 10% 감점 처리함.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사항>

- TOEFL, TOEIC, TEPS, TESL, TOSEL, PELT, HSK, JLPT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0점 처리**
- 교과목의 점수·석차 ⇒ **0점 처리**
-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0점 처리**
- 부모 또는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 예) 부모 또는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 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둠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및 캠프) 등 ⇨ 해당 평가항목 영역별 배점의 10% **감점 처리**
-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학교명 등 인적사항 또는 이를 암시하는 내용

 해당 평가항목 영역별 배점의 10% 감점 처리

<잘못된 자기소개서의 작성 사례>

-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TOEIC 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어공부에 매진한 결과 850점을 얻으며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 **0점 처리**
- 영어 성적이 100점이 되어 전교 1등이 되었습니다. ⇒ **0점 처리**
- 중2 겨울방학 중 OOO에서 주최하는 OOOO 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 0점 처리 / 어렸을 적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전국 단위의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0점 처리
- □□지검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 해당 평가항목 영역별 배점의 10% **감점 처리**
- △△방송반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 해당 평가항목 영역별 배점의 10% **감점 처리** (△△이 출신중학교명을 암시하는 경우)

6 전형 유형별 선발 방법

가, 공통기준

- 1) 전형 구분 없이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 방법은 동일함.
- 2) 1단계 점수(교과 성적 및 출결사항의 환산점수)를 기준으로 모집정원의 2배수 이내에서 2단계 대상자를 선발하며, 1단계 점수 동점자는 모두 2단계 대상자로 선발함.
- 3) 최종 합격자 동점 처리 기준 : 2단계 총점 > 면접 총점 > 서류 총점 > 면접 시 인성점수 > 1단계 총점 > 3학년 2학기 국어·영어·수학 성취도의 환산점수 합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함.
- 4) 정원 내 학생선발 시 서울특별시와의 협약에 따라 강남·서초·송파구에 거주하는 학생(주소지 기준)은 모집정원의 20%(40명) 이내로 제한함.

나. 사회통합전형

1)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 실시

💠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

- 1단계 :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를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60%(24명) 우선 선발
- 2단계 : 1단계 탈락자와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대상자 중에서 선발
- 3단계 : 2단계 미충원 시에 사회다양성전형 2순위 대상자 중에서 선발

※ 사회통합전형 순위별 유형은 지원 자격 참조

- 2) 기회균등전형 선발 시 각 성별로 정원의 60%를 우선 선발함. 단, 한 성별에서 미충원 시 다른 성별에서 선발하여 기회균등전형 대상자가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60%가 되도록 함.
- 3) 교육지원대상자(정원 외)가 아닌 "국가보훈대상자"는 기회균등전형으로 타 유형의 기회균등전형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함.
- 4) 다자녀가족(3인 이상) 자녀 선발 인원은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30%(12명) 이내로 함.
- 5) 단계별 전형으로 전형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됨.

7 합격자 배제 조건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을 배제함.
 - 가. 제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 나. 전기고(영재학교 제외) 합격자, 타 자사고나 외고·국제고 지원자가 본교에 지원하는 경우 등 이중으로 지원한 자
 - 다. 본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 자

8 합격자 발표

- 가. 합격자 발표 : 2023.1.2.(월) 본교 홈페이지
- 나. 합격자 예비소집 : 2023.1.7.(토)
- 다. 합격자 등록금 납부 기간 : 2023.1.25.(수) ~ 1.27.(금)
- ※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

가. 교육비 지원

9

1) 2023학년도 신입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2023년에 시행되는 「2023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기본 계획」에 따라 지원함.

※ 단, 실제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 등은 입학 후 변경될 수 있음.

- 2)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득·재산 등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여부가 결정됨.
- 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하였더라도 교육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교육비 지원 불가
- 3) 참고: 「2022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기본 계획」안내
- 학비 지원 : 법정 저소득 자격 유무에 따라 지원 내용 상이

	지원 기준 및 지원 범위				
구분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교육급여)	지자체 1/2 교육청 1/2 교육청 전액 지원			
학교운영지원비	교육청 지원 (연 731,000원 이내)				

- ※ 특수교육대상자 학비 지원 사업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으로 2021학년도부터 단계별 종료
- 특수교육대상자도「2023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기본 계획」지원 기준에 따름.
-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 지원항목 및 자격

지원 항목(4종)	지원 자격		대상 확인
① 소규모테마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교육여행비	법정저소득자격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NEIS > 학생복지 >
② 수련활동비③ 앨범비		법정차상위대상자	· 교육비지원 >'심사관리'
④ 기숙사비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나		

- 항목별 지원 단가

지원 항목	단가
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1인당 400,000원 이내 실비
2. 수련활동비	1인당 140,000원 이내 실비
3. 앨범비(3학년)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4. 기숙사비(기숙사 입사생)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법정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은 학기 중 법정 저소득자격이 상실되더라도 당해 학년도 말까지 계속 지원

나. 사회통합전형 학생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 운영

영 역	프 로 그 램
학업 능력 향상	서포트 수업 및 멘토링 활동, 아침독서 프로그램
비교과 활동 강화	한아름 학당(인문학교, 과학학교, 마스터클래스), 코딩스쿨, 테마형 캠프
학교생활 적응 제고	전문 상담교사를 통한 심리·진로 검사 실시, 사제동행 프로그램
진로 및 진학지도 강화	맞춤형 진로지도 실시, 맞춤형 진학 컨설팅

[※] 사회통합전형 학생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은 2022학년도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다. 장학금 지원

- 1) 본교는 지자체 및 교육청의 교육비 지원 외에도 서울시와 학교법인에서 장학금을 추가 지원하므로 장학금 지원 규모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음.
- 2) 학교법인 장학금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학교장학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예산 등의 이유로 매년 장학금 지원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3) 자격별 지원항목
 - '가'항(교육비 지원)의 지원금과 서울시 및 학교법인 장학금 지원을 총괄하면 아래 표와 같음.
 - 학교법인 장학금은 타 기관의 교육비 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으며, '가'항(교육비 지원)에서 일부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않은 부분을 아래 기준에 따라 학교법인 장학금으로 추가 지원함.
 - [참고] 전년도 지원항목 및 자격

지원항목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재산심사 결과, 중위소득 100% 이하
하니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전액 지원	전액 지원
학비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	연 731,000원 이내 지원	-
	기숙사비	전액 지원	전액 지원	전액 지원
수익자 부담경비	급식비	조식, 석식 (중식 무상급식,	-	
	방과후수업료	일부 지원 (자유수강권 소진 시 일부 추가 장학금)		-
	기타		, 수련활동비, 앨범비 등 남경비 일부 지원	-

10 기타 유의 사항

가.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772호, 시행 2021.3.1.) 제2 조 및 제7조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입학금과 수업료는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 10일 이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함.

나. 이중지원 금지

- 전기고(영재학교 제외) 합격자, 타 자사고나 외고·국제고 지원자는 본교에 지원할 수 없음.
- 이중지원 금지는 서울특별시 관내 고등학교는 물론 타시도 소재 고등학교에도 적용됨.
- 다. 면접 대상자는 면접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또한 정해진 면접 대기실 입실 완료 시간 이후 도착자는 면접에 응시할 수 없음.
- 라. 면접 당일 지원자는 교복이나 배지 등 본인의 출신학교가 나타나는 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안 됨. 면접 당일 지원자는 통신, 촬영, 녹음, 녹화, 재생 장치 등 일체의 전자 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 며, 본교 진행 요원의 지시에 불응하여 계속 소지하고 있는 자는 부정행위로 간주함.
- 마. 면접 당일 본교 진행 요원 또는 면접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퇴실 시간 전에 허가 없이 퇴실하는 행위, 다른 응시자와 불필요한 접촉이나 대화를 하는 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함.
- 바. 면접 응시자는 면접 후 입학전형영향평가 온라인 조사에 참여하여야 함.
- 사. 제출한 기재 내용 중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불법, 부 정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자는 입학한 후에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함.
- 아. 지원자는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을 인터넷 접수 시 업로드 하여야 함.
- 자. 입학원서에 기재된 개인 정보는 신입생 입학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법 규정에 따라 수집·이용·제공됨.
- 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카. 본교 입학생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며, 신체검사 결과 기숙사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타.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입학 관련 문의>

(우) 033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535 (진관동)

홈페이지: www.hana.hs.kr 입학전화 02) 6913-1160 FAX 02) 6913-1785

♣ 참고 자료 1 건강보험료 기준 및 기구원수 적용 매뉴얼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외)조부, (외)조모 제외]
 - ※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 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 기혼인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포함(단, 원수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만 인정).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는 경우 미포함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친부 또는 친모)를 포함하여 가구원 수 산정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친부와 친모 건강보험료 합산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확인하여 합산

③ 건강보험료 산정 및 적용 방법

- O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소득이 없는 달(하시적으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은 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 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시 휴직 전 납부된 건강보험료로 산정
 - ※ 입학 지원서 제출 당시 복직한 경우 복직 후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로 산정
- O (적용)
 - ※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과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O (사례)
 -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4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 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 4만원(부)+2만2천원(모)⇨가구 건강보험료(혼합 6만2천원)

➢ 참고 자료 2

시회통합전형 국기보훈대상자 범위 및 제출서류

대상자	근거	증명서류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독립유공자(유족)
손자녀	제1호 및 제2호	확인원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3호~제18호, 제73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및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5·18민주유공자
그 자녀	관한 법률」제4조 제1호~제3호	(유족) 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 및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특수임무유공자
그 자녀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제3호	(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그 자녀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	(유족)확인원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정원 외 보훈자자녀전형 대상으로 별개 사항임

[붙임1]

2023학년도 고입 (사회통합·보훈자 자녀·특례대상자)전형 학교장 확인서

발급 번호 2022 -

성	명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주 소							
출신학교 ((검정고시) () 지					(졸업 / 졸업 졸업학력 검결		격
	전	전형 유형	순위		지원 자격		
정	사회	기회균등전형	60% 우선	유형 ()		
원	원 통합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유형 (), 가	구원수 (인)
ᅫ	전형	74-16666	2순위	유형 (), 가-	구원수 (인)
정		보훈자자녀전형		교육지원디	개상자 ()		
원 외	_	1입특례대상자전형			육법시행령 제82)호 ()목	2조제3항 대상자	
·		· 2023학년도 고입 라인합니다.	(사회통	등합, 보훈기	아 자녀, 특려	대상자)	전형
20224		년	월	일			
				() 중학교	고장 (2	직인)
하	나고	.등학교장 귀	하				

- ※ 발급 번호 : 중학교별로 확인서를 발급한 연번호 기재
-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출신학교' 란에 '검정고시' 합격 지역 및 연월 기재, 확인자는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 ※ 지원 유형
 - 기회균등전형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기재
 - 사회다양성전형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및 가구원수 기재
 - 보훈자 자녀전형 : 정원 외 교육지원대상자의 경우 ()에 '○'표시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는 기회균등전형에 기재)
 - 고입 특례대상자전형 : ()에 『서울특별시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통보 결과 기재

[붙임2]

2023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접수 번	호 2022	-
------	--------	---

и н	학 생					학생		
성명 학부모					학부모			
주 소								
출신학교	() =	중학교 ()년 2월] (졸업 /	/ 졸업예정	3)	
(검정고시)	() 지역	역 ()년()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정 사회 원 통합	사회	기회균등전형	60% 우선	유형 ()	
지원 유형		통합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유형 (), 가	구원 수 (인)
및	내	전형	NAU 6 0 C 6	2순위	유형 (), 가	구원 수 (인)
지원 자격	원	보훈	보훈자 자녀전형		교육지·	원대상자	()	
		특례대상자전형		초·중등 제(교육법시)호 (행령 제82 <i>조</i>)목 대		
위의 해당 지원 유형 및 지원 자격에 적합하게 지원하였음을 서약하며, 지원 자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 자격이 없음에도 증명서 위조 및 누락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학	생		(>	· 명)
학부모 ((>	H명)		
하나고등학교장 귀하								

- ※ 접수 번호 : 사회통합전형, 보훈자 자녀전형, 고입 특례대상자 전형별 접수 번호 기재
-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출신학교' 란에 '검정고시' 합격 지역 및 연월 기재
- ※ 지원 유형
 - 기회균등전형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기재
 - 사회다양성전형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및 가구원수 기재
 - 보훈자 자녀전형 : 정원외 교육지원대상자의 경우 ()에 '○'표시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는 기회균등전형에 기재)
 - 고입 특례대상자전형 : ()에 『서울특별시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통보 결과 기재

[붙임3]

2023학년도 고입 기회균등전형 중 '학교장 추천자' 유형 학교장 추천서

발급 번호 2022 -

			ı		
성 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출신학교	() 중학	·II ()년 :	2월 (졸업 / 졸	업예정)
지원유형	기회균등전형([가정형	편이 어려운	는 학생 중 학교	<i>!</i> 장 추천)
증빙 서류					
추천 사유(※ 호	학교장 추천 요?	<u></u> 보만 기	재할 것,	3쪽 참조)	
	2022년		월	일	
			() 중학교	고장 (직인)
원미크트	하고자 ㅋㅋ				
하나고등학	학교장 귀하	-			

- ※ 발급 번호 : 중학교별로 추천서를 발급한 연번호 기재
- ※ 중학교에서 '2023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추진계획'에 따라 대상자 유형, 증빙 서류, 추천위원회, 학교운영 위원회 등 심의 절차를 거쳐 추천 대상자로 확정된 학생에 한해 추천서 발급 (지원 고등학교에 '학교장 확인서'와 '학교장 추천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회의록'등 증빙 자료 모두 제출)

 $\left[\begin{array}{c} \left[\begin{array}{c} \label{eq:constraint} \label{eq:constraint} \end{array} \right] \times$ 입학원서 양식은 참고용으로만 공개하는 것이며, 실제로는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에 해당 부분을 입력한 후 최종 출력물을 제출해야 함. 사진도 별도로 부착하지 않고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원서와 수험표에 자동으로 인쇄됨.

2023학년도 하나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원서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시오.

	E-166	/						
접	수번호	*		수험번호	*			
	성 명		생년월일					
	8 8		성별	남 · 여		본인 휴대전화	75 °	
지		우편번호:			연락처	보호자 휴대전화	75 3	
지 원 자	주 소					출신중학교	₩	
	학 력	년 월 [졸업	중학교]예정()	학년 반 · 졸업() ·	번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	고시합격()]	
	중학교 주 소	우편번호:						
전	전형 구분 사회통합전형 유형 (사회통합전형의 경우만 기재)					기재)		
담임교사 확인 ()학년 ()학년 ()반 담임교/	악 () ①	
 -		 		지원합니다.			하고자 소정의	
	(3cm x 4c 최근 3개 이내	m) j 월		2022년	월	일	.,	
	9141	į			지원자:		(인)	
		출신학교장 직인			보호자:		(인)	
└ [│] 하나고등학교장 귀하								
위의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며, 위 학생이 귀교 교육과정을 성								
실히 이수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2022년 월 일							
		()중	학교	장 (직인)		
 ※중:	학교 졸업학	학력 검정고시 합격X	나는 거주지 괸	· - - - - - - - - - - - - - - - - - - -	중등교육지	원과장 날인 (<i>,</i>	사진에도 날인)	

입학원서(서류) 접수증 접수번호 ※ 성 명 (※서류 제출 시, 본 접수증을 지참할 것) 2023학년도 하나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원서를 위와 같이 접수합니다. 2022년 12월 일 하나고등학교장

수 험 표					
접수번호	*				
수험번호	*				
성 명					
(※면접 시, 본 수험표를 지참할 것) 사 진 (3cm×4cm) 최근 3개월 이내 하나고등학교장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날인

취

선

[붙임5] ※ 자기소개서 양식은 참고용으로만 공개하는 것이며, 실제로는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에 해당 부분을 입력 및 저장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함.



2023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자기소개서

수험번호	*
------	---

지원자 기재 사항							
성 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확인 서약							
본인은 이 자기소개서를 사실에 입각하여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 서약합니다. □							
	2022년 12월 일 대원자						

하나고등학교장 귀하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 1. 자기소개서는 평가를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 여 정직하게 자기주도학습 과정, 건학이념과 연계한 지원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계 획, 진로계획, 인성영역 활동 실적과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등을 기술하십시오.
- ※ 자기소개서의 대리 작성, 허위 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 부과
- 2. 본문에는 자신의 경험이나 사례 등을 들어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과목의 점수·석차,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우회적·간접적 기재 포함) 등은 기재 시 0점 처리되며, 부모 또는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지원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등은 기재 시 해당 평가항목 영역별 배 점의 10% 감점 처리되니 기재하지 마십시오.
- 3. 본문은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입력하며,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1,500자 이내이어야 합 니다.
- 4. 자기소개서는 면접대상자 발표 후 2단계 면접대상자에 한해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작성 및 저 장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제출 기간 : 2022.12.15.(목) 17:00 ~ 12.19.(월) 24:00까지) ※ 자기소개서 온라인 입력 기간 종료 이후에는 입력 및 수정이 절대 불가합니다.
- 5. 자기소개서는 입학 전형 및 입학 후 학생 지도 자료로 활용되며, 비공개 문서로 관리될 것입 니다.

	나의	꿈과	끼,	인성	(띄어쓰기	제외	1,500자	이내)
--	----	----	----	----	-------	----	--------	-----

- ① 본인이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학습해 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낀 점
- ② 본교의 건학이념과 연계해 하나고등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 ③ 고등학교 입학 후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계획 및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계획
- ④ 본인의 인성(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준수 등)을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 경험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 ※ 항목별 분량지정은 없으나, 위의 항목이 모두 포함되도록 서술해야 함.

(※	이 양식은	줄력용	견본입니	l다.					
	자기소개서	본문은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입력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안내

본 입학원서에 기재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신입생 입학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제공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85조, 제86조, 제91조의3, 제97조, 제104조의7, 제106조의3 및 본교 입학전형 실시 계획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지원자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증명사진, 연락처, 주소, 학력, 출결사항
- 보호자 :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생년월일, 건강보험료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 출입국사실**
- *사회통합전형 해당자에 한함, **고입특례대상자전형 해당자에 한함
- (목적) 신입생 선발 및 입학 관리 업무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86조, 제91조의3, 제97조, 제104조의7, 제106조의3
- 2. 민감정보 수집 · 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학생 및 학부모 장애 정보(사회통합전형 중 해당자에 한함)
 - (목적) 신입생 선발 전형 중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 확인
 -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
- 3. 제3자 제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받는 기관) 출신 중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중앙방역대책본부, 경기도 교육청
 - (제공받는 기관의 목적) 지원 자격·지원 결격 사유 조회, 이중지원 확인,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증, 코로나19 관리대상자(확진자, 자가격리대상자) 확인
 - (제공 항목) 학생 이름, 학년, 반, 번호, 성별, 생년월일, 출신 중학교명, 지원 고등학교명, 합격·불합격 여부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85조, 제86조, 제106조의3